

의안번호	제 66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발 의 자	이수완 의원
발의연월일	2021년 3월 3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이수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65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이수완 의원

찬 성 자 : 박성원,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의원

1. 제안 이유

충청북도 내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2조)
- 나. 기본원칙(안 제3조)
-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라.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마.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안 제6조)
- 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안 제7조)
- 사.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안 제8조)
- 아. 교육행사 개최(안 제9조)
- 자. 보조금 지원(안 제10조)
- 차. 예산 지원(안 제11조)

카.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타. 표창(안 제13조)

파. 시행규칙(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미래인재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20호

(2021. 2. 22. ~ 2021. 2. 26.)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학생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학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 등과의 공감 및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에 관한 사항
4. 학교문화예술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원 대상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연수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학생·문화예술인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10조(보조금)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2020.12.8.] [법률 제17592호, 2020.1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 (이하 “교육단체” 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생략)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업무추진이 가능하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